



제1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규명 또는 예방대책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신뢰성평가) ① 노동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신뢰성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1항중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관리 및 감독, 제2항에 따른 환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 및 환수에 관한 업무

제68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제72조제2항제2호중 “제12조”를 “제12조 전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연구기관 등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第12條(安全標識의 附着等) 事業主는 事業場의 有害 또는 위험한 施設 및 場所에 대한 警告, 非常時 措置의 案내 기타 安全意識의 鼓吹를 위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安全 · 保健標識을 設置하거나 附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第12條(安全標識의 附着등)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 .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 · 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第26條(作業中止등) ① ~ ③ (생 략)</p> <p>④ 勞動部長官은 重大災害가 발생한 경우 勞動監督官과 關係專門家로 하여금 災害原因調査, 安全 · 保健診斷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p>	<p>第26條(作業中止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규명 또는 예방대책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 보건진단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p>	<p>⑤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신 설〉</p>	<p>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신뢰성평가) ① 노동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신뢰성평가의 방법 ·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第62條(産業災害豫防活動의 촉진) ① 政府는 事業主 · 事業主團體 · 勞動者團體 · 産業災害豫防關聯專門團體 · 研究機關 등이 행하는 産業災害豫防事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第62條(産業災害豫防活動의 촉진) ①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 · 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보조 · 지원이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 · 감독을 하여야 한다.</p> <p>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 ·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 ·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 ·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현 행	개정안
〈신 설〉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④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관리 및 감독, 제2항에 따른 환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②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16. (생 략) 17.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지원에 관한 업무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6. (현행과 같음) 17.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 및 환수에 관한 업무
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第72條(過怠料)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생 략) 2.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 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 5. (생 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12. (생 략) ④ ~ ⑦ (생 략)	제72條(過怠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 전단----- ----- ----- ----- ----- 3. ~ 5. (현행과 같음) ③-----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12.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